

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1년 3월 9일)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 김영국)

□ 제안이유

- 근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공인함을 당직책임자가 보관하던 규정을 공인관리자가 보관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,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“관수자”를 “관리자”로 변경함(안 제13조 및 제15조)

나. “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”를 “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14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| 답변 내용 |
|---|--|
| <p>○ 공인을 당직실에 보관하는 것은 비상시 사용이 목적인데 그동안 당직실에 보관해 오던 공인을 사용한 사례는 없는가?</p> | <p>○ 전자정부 시행으로 공인사용 사례가 거의 없으며, 관리상 문제가 있고, 타 시·군의 경우에도 공인관리 부서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음.</p> |
| <p>○ 동조례 규칙상 공인관리자 직위명칭이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?</p> | <p>○ 개정하겠음.</p> |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그밖에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관수방법,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”를 “보관, 공고 요령, 그 밖에 공인관리에”로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사용년월일”을 “사용연월일”로, “폐기년월일”을 “폐기연월일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사용중인”을 각각 “사용 중인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관수자”를 “관리자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공인 관수자)”를 “(공인 관리자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관수자”를 “관리자”로 하며, 같은 조 단서 중 “관수자”를 “관리자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관수방법)”을 “(공인의 보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”를 “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관수자”를 “관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끝글자”를 “끝 글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